



# 대검찰청

##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19. 6. 23.(일)

자료문의 : 국제협력단  
전화번호 : 02-3480-2526  
주책임자 : 국제협력단장 손영배

## 제 목

## 한보 정태수 회장의 4남 정한근의 국내 송환

-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2018년 8월부터 해외도피사범 중 국외 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수익은닉사범이자 고액 체납자를 핀셋형 추적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대상자의 해외소재를 추적해 오고 있음
- 핀셋형 추적대상자 중 회사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한 후, 국외에 은닉하고, 약 253억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21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정한근(54세)을 추적 10개월만에 국내로 송환함
- 정한근은 1998년 6월 위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잠적하였고, 당시부터 출입국내역상에 출국기록이 없어 막연히 밀항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위 사건에 증거법상 해외도피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완성에 임박한 2008년 9월에 기소됨
- 그러나, 기소이후 정한근의 소재불명으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2023년 9월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시효가 경과되어 공소시효 경과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음
- 한편, 2017년 6월 정한근이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인터뷰의 방송을 단서로 2018년 4월 미국에 범죄인인도가 청구되었으나 정한근의 미국내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절차가 진척되지 못함

- 이에 국제협력단은 2018년 8월부터 원점에서 위 정한근의 사건기록 등 관련 기록 정밀검토, 정한근의 처, 자녀의 출입국내역 확인결과, 가족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위 가족의 캐나다 거주를 위한 서류에 정한근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 A○○(64년생, 현재 국내거주)의 이름이 스폰서로 사용된 것을 단서로 본격적인 정한근의 추적에 돌입함
- 그 이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정한근이 A○○의 이름을 이용하여 여러 영문이름으로 캐나다, 미국 각 영주권과 시민권을 순차로 취득, 신분을 세탁하고, 2017년 7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함
- 이에 따라 2019년 2월 에콰도르에 정한근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에콰도르 현지 출장을 통하여 정한근의 송환을 시도하였으나, 2019년 4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에콰도르 대법원에 의해 인도가 거절됨
- 그 이후부터 에콰도르 외교부, 내무부 등과의 화상회의, 공문발송으로 정한근의 체류비자 연장불허 및 추방을 협의해 오던 중 에콰도르 내무부로부터 정한근이 LA를 목적지로 2019년 6월 18일(에콰도르 현지시각) 04시23분발 파나마행 비행기로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륙 약 1시간 전에 통보받음
- 그 즉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협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파나마지부를 통하여 파나마 이민청에 정한근의 인터폴 적색수배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파나마 이민청은 2019년 6월 18일 현지시각 06시 35분(한국 시각 같은날 20시 35분)경 파나마에 도착한 정한근을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함
- 이후부터 대검 국제협력단은 법무부(국제형사과),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및 파나마 등 재외공관, 경찰청(외사수사과 인터폴계) 등과 정한근의 호송방안을 협의, 파나마 대사관 소속 영사가 정한근을 면담, 정한근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브리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경유하여 정한근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음

## 1

# 정한근의 사건개요

### ● 공소사실 요지

- 정한근(54세, 도주 당시 33세)은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 운영자로, 1997년 11월경 동 회사 대표이사, 기획부장과 공모하여, 동아시아가스(주)가 보유한 루시아석유(주) 주식의 매각자금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은닉함**

※ 공범인 전○정(동아시아가스 대표이사), 임○인(기획부장)은 1999년 5월경에 각 징역 3년, 2년6월 및 공동 추징금 약 434억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추징금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집행불능 처리되었음

- 정한근은 1998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잠적하였고, 2008년 9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되었으며, 재판중인 위 사건은 2023년 9월 23일 재판시효<sup>1)</sup>완성 예정임

## 2

# 정한근의 신분세탁 및 소재 추적

### 1. 국제협력단의 신분세탁 추적과정 및 결과

- 2018년 8월, 정한근의 사건기록을 소재추적을 위한 주변인물 중심으로 정밀 하게 검토하고, 정한근의 가족인 처와 자녀들의 출입국내역, 각 여권발급 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처와 자녀들이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었음
- 2018년 9월,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위 가족의 캐나다 거주와 관련된 서류에 위 가족의 스폰서로 캐나다 시민권자인 A○○(64년생, 현재 국내거주)의 이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함

1) 재판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25년으로 규정, 2007. 12. 21. 개정 전에는 15년임)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2007.12.21) 제3조(공소시효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에 따라 본건은 15년의 재판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임

- 이에 위 A○○의 주민조회, 출입국내역 등 국내자료를 확인한 결과, A○○는 국내 거주 중으로 캐나다에 간 사실이 없고, 정한근의 가족 거주와 관련하여 캐나다에 제출된 사진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
- 한편, A○○는 2010년에 국내에서 A△△로 개명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정한근이 A○○의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A○○의 이름을 이용한 영주권, 시민권 관련자료를 확보함
- 그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A○○의 지문정보를 확보하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에서 정한근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문과 대조감정한 결과, 오른쪽 시지가 일치하여 정한근이 A○○의 이름을 이용하여 신분 세탁한 사실을 확인함
- 결국, 정한근은 A○○의 이름과 범죄경력, 가족 등 신상정보로 벨리즈<sup>2)</sup>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 캐나다 영주권(영문이름 : RYU, Daniel Seung Hyun), 2008년 미국 영주권(영문이름 : RYU, Seung Hyun), 2011년 미국 시민권(영문이름 : LIU, Sean Henry), 2012년 캐나다 시민권(영문이름 : RYU, Daniel)을 순차로 취득하였고, 2011년 미국 시민권 취득은 대만계 미국인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하였음

※ 2019년 1월 국제협력단은 경찰청을 통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되어 있던 정한근의 인적 사항에 위 영문이름들이 인터폴 수배내용에 함께 기재되도록 조치함

## 2. 정한근의 최근 소재확인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하여 정한근의 위 시민권자로서의 출입국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정한근이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함
- 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파나마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한근이 에콰도르내 과야quil(Guayaquil, 수도인 키토에서 500km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까지 밝혀짐

2) 멕시코와 과테말라 사이 카리브해의 경계선에 있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국가

## 1. 에콰도르 대법원에 범죄인인도청구

- 2019년 2월, 에콰도르는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 조약 미체결국이나,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법무부 국제형사과, 외교부를 경유, 에콰도르 대법원에 정한근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음
-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에콰도르 대법원의 범죄인인도 청구 보완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완서류를 에콰도르로 송부하고, 에콰도르 범죄인인도법 제8조에 따라 정한근을 예방적 구금(Preventive Detention)제도로 구금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함

## 2. 국제협력단의 에콰도르 현지 출장

- 2019년 4월 초순, 정한근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위하여 국제협력단장, 검사 1명이 1주일간 에콰도르 현지로 출장, 외교부, 내무부(경찰), 대검찰청, 대법원을 순차로 방문하였고, 특히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직접 면담하여 정한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그 과정에서 에콰도르 내무부는 국경 출입국관리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한근의 출국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그 즉시 국제협력단에 알려 주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함
- 특히, 출장기간 중에 에콰도르 대법원의 범죄인인도재판 개시 및 구금 명령으로 정한근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콰도르 대법원장이 40여분 면담시 의문을 표시한 쟁점에 대하여 주 에콰도르 대사관 자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현지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에콰도르 대법원은 국제협력단의 귀국 후인 2019년 4월 중순,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법과 달리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한정적인 에콰도르 국내법에 따라 정한근에 대한 한국 검찰의 기소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기소이어서 한국에서 재판중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더라도 에콰도르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인인도청구를 거절함

### 3. 강제추방절차로 송환 시도

- 에콰도르 대법원에 의해 범죄인인도에 의한 송환이 좌절됨에 따라 국제협력단은 2019년 4월 중순이후부터 최근까지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에콰도르 내무부 등과 또다른 송환방법인 강제추방절차를 협의해 옴
-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콰도르 외교부, 내무부, 인터폴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정한근의 에콰도르 체류비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공문으로 에콰도르 내무부에 에콰도르 체류비자연장 불허와 함께 불법 체류시 한국으로의 강제추방절차를 요청하였음

## 4

### 본건 송환과정

#### 1. 파나마(토쿠멘 국제공항)에서 정한근이 검거된 과정

- 국제협력단은 2019년 6월 18일 17:30경 에콰도르 내무부로부터 정한근이 LA를 목적지로 2019년 6월 18일(에콰도르) 현지시각 04시 23분에 떠나는 비행기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비행편명과 함께 이륙 약 1시간 전에 전달받음
- 전달받은 비행편명을 검색한 결과, 파나마를 경유하는 비행기임을 확인하고, 정한근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 경유지인 파나마(범죄인인도조약 미체결국)로부터 송환을 시도하기로 하고, 그 즉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에 연락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파나마지부를 통해 파나마 당국의 협조를 구해줄 것을 요청함
- 정한근의 소재추적부터 긴밀히 국제협력단과 공조하여 정한근의 신분세탁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왔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는 즉각 파나마지부를 통하여 파나마 이민청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정한근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전달하였음
- 파나마 이민청은 파나마 현지시각 2019년 6월 18일 06시 35분(한국 시각 같은 날 20시 35분)경 파나마 토쿠멘 국제공항에 LIU Sean Henry라는 이름의 미국 시민권자로 도착한 정한근의 지문을 채취, 인터폴 적색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입국을 거부, 파나마 현지시각 08시(한국 시각 같은 날 22:00)경부터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함

## 2. 브라질 상파울루, 두바이를 경유한 과정

- 파나마 이민청은 정한근을 공항 보호소에 구금한 후 그 즉시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위 구금사실을 통지하고, 당관 영사는 우리 경찰청(외사수사과 인터폴계)과 국제협력단에 위 구금 사실을 알려줌
- 국제협력단은 주파나마 영사와 정한근의 인터폴 적색수배 범죄사실 요지, 현재 이용중인 미국 시민권의 신분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파나마 영사는 구금된 정한근에게 파나마 체류시 향후절차 등을 설명하는 등 면담, 자진 귀국의사를 밝힌 정한근으로부터 미국 여권을 반납받음
- 그에 따라 법무부(국제형사과),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파나마 등 재외공관, 경찰청(외사수사과 인터폴계) 등과 즉각적으로 정한근의 신속한 호송 방안을 협의하여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경유하여 정한근을 국내로 송환하기로 하고, 주파나마 대사관은 즉시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함
- 이러한 긴밀한 협력하에 정한근의 파나마에서부터 상파울루까지(7시간 비행)의 송환에 주파나마 영사, 파나마 이민청 직원 1명이 동행하고, 상파울루부터 두바이까지(14시간 비행) 주상파울루 영사, 브라질 연방경찰 1명이 동행함으로써 순조로운 송환이 가능하였음

## 3. 두바이에서 송환한 과정

- 국제협력단은 신속한 송환을 위하여 법무부, 외교부와 협의하여 마지막 경유지인 두바이로 즉시 호송팀(법무부 1명, 대검 1명, 서울중앙지검 2명)을 급파함
- 호송팀은 한국시각 2019년 6월 21일 03:55경 두바이에 도착한 정한근을 인도받아 약 4시간 30분 뒤에 인천으로 출발하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호송하려고 하였으나, 정한근이 이륙 1시간여 전부터 피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탑승을 거부하였음
- 이에 호송팀은 두바이 공항내 병원시설에서 현지 의료진을 통해 정한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정한근의 비행기 탑승에 대한 의료진의 승인을 받아 한국시각 6월 22일 03:35에 두바이를 출발하는 대한항공 국적기(KE952)로 송환하였음

※ 파나마에서부터 정한근의 한국송환에 약 57시간(비행시간 합계 약 30시간, 대기 시간 합계 약 27시간)이 소요됨

## 5

## 향후 계획

- 국제협력단은 앞으로도 해외도피사범 중 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수익 은닉사범을 우선적으로 집중 추적하고,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주요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중요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에 주력할 예정임 ■